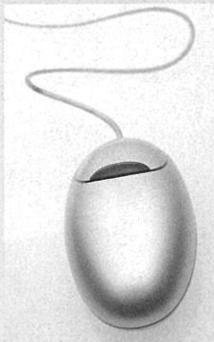


— 공공구매입찰참여를 위한 세부내용



공공구매 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절차 세부내용

최근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 관공서 등 공공기관의 골판지상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하려면 참여기업들은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구매 입찰종류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구매 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절차 세부내용

최근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골판지상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하려면 참여기업들은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구매 입찰종류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구매 입찰종류

가. 중기간경쟁입찰제도

중소기업만 경쟁을 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 대상 : 대기업은 배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과 조합이 참여 가능
- 기본요건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10억원 이상

나. 수의계약제도(소액수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적격한 업체를 추천 받는 제도(영세 소기업의 수주 활성화,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

- 구매대상 : 5천만원 이하의 경쟁제품
- 추천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한정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다. 다수 공급자 물품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 도입배경
최저가 중심의 단일 낙찰제(기존 일반경쟁 입찰 방식의 한계)
계약업무의 번잡, 과도한 시간소요
조달물자의 다양성 부족 및 수요기관의 선택권 축소
- MAS 개요
각 수요기관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규격화된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달청이 2인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각 수요기관(공공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운영

2. 직접생산확인 취지 및 목적

가. 직접생산확인의 취지

- 대기업, 수입제품의 납품 하청생산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

나. 직접생산확인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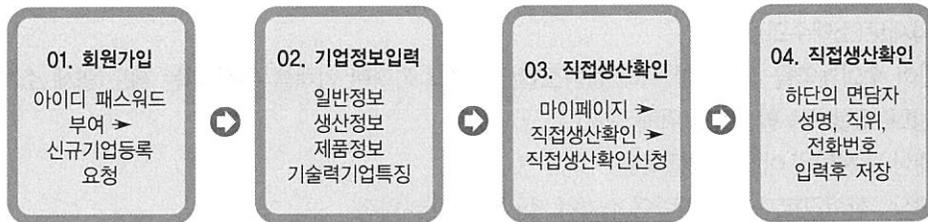
- 중기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경우 납품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의 무화
- 중기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에 대하여 각각 확인기준을 운영
- 확인기준 :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 확인

3.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미가입 업체

(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후 직접생산 확인 신청)

표1.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화면 상단 : 회원가입“클릭
→ “중소기업이용자”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입력 → 회원가입 신청 (신청 당일 회원승인 처리)

② 신규기업등록요청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 좌측 메뉴의 신규기업등록요청 클릭

③ 기업정보입력

-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입력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까지 입력 후 기업특징으로 이동 우측 상단 최종승인 요청 버튼 클릭)
- * 제품정보 입력시 산업분류번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17210] 선택, G2B 분류번호 : G2B
물품분류명 - 골판지 홈 상자 [24112501] 선택

④ 직접생산확인 신청

- 마이페이지 “직접생산확인”클릭 -> 클릭 후 나타나는 하위메뉴의 직접생산확인신청”클릭 후 하단의 면담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 기재 후 저장

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가입 업체(기한만료로 인해 재실사)

- ① 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기업 (“기업정보내역” 입력 기업)
- ② 직접생산확인은 최종승인일부터 2년까지만 유효
- ③ 표1의 03, 04번 참조

4. 직접생산확인 방법

가. 원칙적으로 생산을 위한 필수인력, 시설, 장비보유 및 주요 공정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나. 물품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가가치 기여율 등을 기준에 추가하거나 일부 항목을 확인기준에서 제외

다. 직접생산확인은 물품별 특성에 다양성으로 인해 업계 스스로 조정 및 자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 (또는 중앙회)과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민원발생 등 주요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확인

라. 직접생산확인 시점은 입찰참여 전 단계, 생산 및 납품단계로 구분

마. 직접생산확인업체에 대한 제재

- 위반 업체 및 심사불응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삭제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사내용

- 항목별 실태조사표에 의한(실사 및 증빙서류)조사표 작성, 해당 증빙서류 수집, 사진촬영
- 방문시각, 목적, 담당자, 증빙서류 준비 내용 등은 조사원이 사전 통보

